「전염병 예방·치료법」

(제 48 조-제 60 조)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44년 11월 18일
- 개 정 일: 2019년 5월 24일
- 공 포 일: 2019년 6월 19일
- 시 행 일: 2019년 6월 19일

제1장 총칙
제2장 예방·치료 체계
제3장 전염병 예방
제4장 방역조치
제5장 검역조치
제6장 벌칙
제7장 부칙

원문	번역문
第四章 防疫措施	제4장 방역조치
第四十八條 主管機關對於曾與傳染病病人接觸或疑似被傳染者，得予以留驗	제48조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이미 접촉하거나 전염되었다고 의심

；必要時，並得令遷入指定之處所檢查、施行預防接種、投藥、指定特定區域實施管制或隔離等必要之處置。	되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정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백신접종·투약·특정구역 지정 및 관리통제 또는 격리 등 필요한 처분을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中央主管機關得就傳染病之危險群及特定對象實施防疫措施；其實施對象、範圍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 위험군 및 특정대상에게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실시하는 대상·범위·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四十九條 傳染病病人移居他處或死亡時，其原居留之病房或住(居)所內外，應由醫事機構或該管主管機關視實際情況，施行必要之消毒或其他適當之處置。	**제49조** 전염병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기구 또는 해당 주무기관은 실제 상황을 살펴서 그가 원래 거주하였던 병실이나 주소(거소) 안팎에 필요한 소독이나 그 밖의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第五十條 醫事機構或當地主管機關對於因傳染病或疑似傳染病致死之屍體，應施行消毒或其他必要之處置；死者家屬及殯葬服務業不得拒絕、規避或妨礙。	**제50조** 의료기구 또는 현지 주무기관은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가 사망하여 시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가족 및 장례 서비스업자는 이를 거부·회피·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前項之屍體，中央主管機關認為	앞 항에서 말하는 시체에 대하

非實施病理解剖不足以瞭解傳染病病因或控制流行疫情者，得施行病理解剖檢驗；死者家屬不得拒絕。	여 중앙 주무기관이 병리해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전염병 발병원인을 규명하거나 전염병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해부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사망자의 가족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疑因預防接種致死之屍體，中央主管機關認為非實施病理解剖不足以瞭解死因，致有影響整體防疫利益者，得施行病理解剖檢驗。	백신접종으로 사망하게 된 시체에 대하여 중앙 주무기관이 병리해부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망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방역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리해부 검험을 실시할 수 있다.
死者家屬對於經確認染患第一類傳染病之屍體應於二十四小時內、染患第五類傳染病之屍體應於中央主管機關公告之期限內入殮並火化；其他傳染病致死之屍體，有特殊原因未能火化時，應報請地方主管機關核准後，依規定深埋。 第二項施行病理解剖檢驗者，由中央主管機關訂定補助標準，補助其喪葬費用。	사망자의 가족은 제1급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24시간 안에, 제5급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하는 기간 안에 입관하고 화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화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 주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매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말하는 병리해부 검험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경비보조 기준에 따라 그 장례비용을 보조한다.
第五十一條 中央主管機關於傳染病發生或有發生之虞時，得緊急專案採購藥	**제51조** 중앙 주무기관은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品、器材，惟應於半年內補齊相關文件並完成檢驗。 無法辦理前項作業程序，又無其它藥品可替代者，中央主管機關得例外開放之，並向民眾說明相關風險。	우 약품·자재를 긴급 특별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년 안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검험을 마쳐야 한다. 앞 항의 작업 절차를 처리할 방법이 없고 그 밖에 대체할 수 있는 약품도 없는 경우 중앙 주무기관은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대중에게 관련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第五十二條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示，優先使用傳播媒體與通訊設備，報導流行疫情及緊急應變相關資訊。	**제52조** 중앙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대중매체와 통신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전염병상황 및 긴급대응 관련 정보를 보도할 수 있다.
第五十三條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指揮官基於防疫之必要，得指示中央主管機關彈性調整第三十九條、第四十四條及第五十條之處置措施。 前項期間，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示，指定或徵用公、私立醫療機構或公共場所，設立檢疫或隔離場所，並得徵調相關人員協助防治工作；	**제53조** 중앙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하는 기간에 지휘관은 방역 필요성에 따라 중앙 주무기관에게 이 법 제39조·제44조·제50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앞 항에서 말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공립 및 사립 의료기관 또는 공공장소를 수용하여 검역소 및 격리장소를 설치하고 예방·치료 업무에 관계자를 징발하여 협조

必要時，得協調國防部指定國軍醫院支援。對於因指定、徵用、徵調或接受隔離檢疫者所受之損失，給予相當之補償。 前項指定、徵用、徵調、接受隔離檢疫之作業程序、補償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하도록 할 수 있다. 필요시 국방부는 국군병원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격리검역 지정·징용·징발·접수로 인한 손실은 적절하게 보상한다. 앞 항에서 말하는 격리검역 지정·징용·징발·접수의 작업절차·보상방식·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五十四條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示，徵用或調用民間土地、工作物、建築物、防疫器具、設備、藥品、醫療器材、污染處理設施、運輸工具及其他經中央主管機關公告指定之防疫物資，並給予適當之補償。 前項徵用、徵調作業程序、補償方式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54조** 중앙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 토지·공작물·건축물·방역기구·설비·약품·의료자재·오염처리시설·운송수단·중앙 주무기관이 공지하여 지정하는 그 밖의 방역물자를 징용·징발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한다. 앞 항의 징용·징발 관련 작업절차·보상방식·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五十五條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各級政府機關依指揮官之指示，對於事業徵用及配銷防疫物資之行為，得不受「公平	**제55조** 중앙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에 징용하거나 방역물자를 배급하

交易法」第十四條、「商品標示法」有關商品標示文字、標示方法及標示事項等規定之限制；各該事業受各級政府機關委託，依政府機關規定價格代售徵用或配銷之防疫物資，其出售收入全數交該委託機關解繳公庫者，免課徵營業稅。	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상품표시법」에서 정하는 관련 상품의 문자표시·표시방법·표시사항 등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해당 사업장이 각 급 정부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부기관이 규정하는 가격에 대리 징용되거나 배급된 방역물자의 수입 전체 물량을 매각하여 해당 위탁기관이 공공창고에 인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영업세는 면제한다.
第五十六條 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各級政府機關得依指揮官之指示，借用公有財產，不受國有財產法第四十條及地方公產管理法規有關規定之限制。 各級政府機關依前項規定借用公有財產時，管理機關不得拒絕；必要時，於徵得管理機關同意後，先行使用，再辦理借用手續。	제56조 중앙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하는 기간에 각 급 정부기관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차용한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지방공공재산 관리법규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 급 정부기관이 앞 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차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시 그 관리하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사용한 뒤, 차용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
第五十七條 地方流行疫情指揮中心成立期間	제57조 지방 전염병상황지휘센터가 정

，地方主管機關於報請中央主管機關同意後，得準用第五十三條至前條之規定。	하는 기간에 지방 주무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의 동의를 구한 뒤 제53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第五章 檢疫措施	**제5장 검역조치**
第五十八條 主管機關對入、出國(境)之人員，得施行下列檢疫或措施，並得徵收費用： 一、對前往疫區之人員提供檢疫資訊、防疫藥物、預防接種或提出警示等措施。 二、命依中央主管機關規定詳實申報傳染病書表，並視需要提出健康證明或其他有關證件。 三、施行健康評估或其他檢疫措施。 四、對自感染區入境、接觸或疑似接觸之人員、傳染病或疑似傳染病病人，採行居家檢疫、集中檢疫、隔離治療或其他必要措施。	**제58조** 주무기관은 출입국(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관의 검역 및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검역관리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검역정보·방역약품·백신접종을 제공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중앙 주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기록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건강진단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성을 살핀다. 3. 건강평가 또는 그 밖의 검역조치를 시행한다. 4.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왔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에 대하여 주택 검역·수용시설 검역·격리치료·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五、對未治癒且顯有傳染他人之虞之傳染病病人，通知入出國管理機關，限制其出國(境)。	5. 완치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경)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의 출입국(경)을 제한한다.
六、商請相關機關停止發給特定國家或地區人員之入國(境)許可或提供其他協助。	6.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사람에 대한 출입국(경) 허가 발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협조를 제공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前項第五款人員，已無傳染他人之虞，主管機關應立即通知入出國管理機關廢止其出國(境)之限制。	제1항제5관에서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이미 없어진 경우 주무기관은 즉시 출입국(경) 관리기관에 그 출입국(경) 제한을 해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入、出國(境)之人員，對主管機關施行第一項檢疫或措施，不得拒絕、規避或妨礙。	출입국(경)하는 사람은 주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검역 및 조치를 거부·회피·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五十九條 主管機關為防止傳染病傳入、出國(境)，得商請相關機關採行下列措施：	**제59조** 주무기관은 출입국(경)으로 전염병이 유입·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다음 각 관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一、對入、出國(境)之人員、運輸工具及其所載物品，採行必要防疫、檢疫措施，並得徵收費用。	1. 출입국(경)하는 사람·운송수단 및 그에 탑재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검역조치를 취하고 비용도 징수할 수 있다.

二、依防疫需要，請運輸工具所有人、管理人、駕駛人或代理人，提供主管機關指定之相關文件，且不得拒絕、規避或妨礙，並應保持運輸工具之衛生。	2. 방역 수요에 따라 운송수단 소유자·관리자·운전자 및 대리인에게 주무기관이 지정하는 관련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회피·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송수단의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對於前項及前條第一項規定之相關防疫、檢疫措施與所需之場地及設施，相關主管機關應配合提供或辦理。	제5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방역조치·검역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데 대하여 관련 주무기관은 협력하여야 한다.
第一項及前條第一項檢疫方式、程序、管制措施、處置及其他應遵行事項等規則；其費用徵收之對象、金額、繳納方式、期間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由中央主管機關定之。	제59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서 말하는 검역방식·절차·관리통제 조치·처분·그 밖의 준수사항 등의 규칙, 이와 관련한 비용 징수 대상·금액·납부 방식·기간·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第六十條 主管機關對於入、出國(境)之運輸工具及其所載物品，有傳染病發生或有發生之虞者，應採行下列措施：	**제60조** 주무기관은 출입국(경)하는 운송수단 및 그에 탑재된 물품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一、對運輸工具採行必要管制及防疫措施，所受損失並不予補償。	1. 운송수단에 필요한 관리통제 조치 및 방역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

二、對輸入或旅客攜帶入國(境)之物品，令輸入者、旅客退運或銷毀，並不予補償；對輸出或旅客隨身攜帶出國(境)之物品，準用第二十三條及第二十四條規定處置。	2. 수입품이나 입국(경)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나 여행자에게 반송 또는 소각을 명령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수출품이나 출국(경)하는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한다.
主管機關對於違反中央主管機關所定有關申報、接受檢疫或輸入之物品，得不經檢疫，逕令其退運或銷毀，並不予補償。	주무기관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하는 관련 신고·검역 접수·수입을 위반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송 또는 소각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